

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

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36
----------	-----

2025. 6. 11.  
행정안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2025. 5. 30. 강남구청장(총무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11.)  
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행정국장)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, 공유재산(삼성로 별관)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강남구议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3. 설치개요

가. 설치위치 : 구 청사 삼성로 별관 주차장(삼성로 628)

- 나. 설치시기 : 2025년 10월
- 다. 설치대수(출력) : 1대(100kW)
- 라. 제조사 및 소유주 : 이브이시스(주)
- 마. 소요예산 : 비예산(민간투자)

#### 4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구 청사 삼성로 별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
- 나. 사업기간 : 2025. 6. ~ 10.
- 다. 운영업체 : 이브이시스(주)
- 라. 운영방법 : 운영업체가 충전시설 무상설치 및 운영·관리
  - 운영기간 : 설치일로부터 5년
  - 이행조건 : 사업 종료시 자진철거 및 이행보증보험 발행
- 마. 계약방법 : 수의계약

#### 5. 향후일정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(사용료 감경 건) : 2025. 7.
- 나.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: 2025. 8. 5.
- 다. 협약서 작성 및 신규시설 설치 : 2025. 10.

#### 6. 법적근거

- 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
- 나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

#### 6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상민)

- 본 동의안은 강남구 청사 삼성로 별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, 본 사업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

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추진 중이며, 공유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동의 대상임.

- 본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며, 강남구민의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.
  - 강남구가 공유재산인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고, 민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비용을 부담한 후 유료로 충전시설을 운영하면서 유지·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임대수입 등 재정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,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특히, 민간투자를 통해 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면서도 구민 편의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, 설치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책임,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명확화, 이행보증보험 등을 통해 분쟁이나 민원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한 사항임.
- 다만, 계약 방식과 관련해서는,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그 타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, 사용료 감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공공성 및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결론적으로, 본 안건은 친환경 정책 실현, 구민 편의 증진, 재정 부담 없는 민간투자 유치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##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# □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

제8조(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)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: “없음”

붙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 
동의안. 끝.

#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53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5. 30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 : 총무과

## 1. 제안이유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, 공유재산(삼성로 별관)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설치개요

- 설치위치 : 구 청사 삼성로 별관 주차장(삼성로 628)
- 설치시기 : 2025년 10월
- 설치대수(출력) : 1대(100kW)
- 제조사 및 소유주 : 이브이시스(주)
- 소요예산 : 비예산(민간투자)

### 3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구 청사 삼성로 별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
- 사업기간 : 2025. 6. ~ 10.
- 운영업체 : 이브이시스(주)
- 운영방법 : 운영업체가 충전시설 무상설치 및 운영·관리
  - 운영기간 : 설치일로부터 5년
  - 이행조건 : 사업 종료시 자진철거 및 이행보증보험 발행
- 계약방법 : 수의계약

### 4. 향후일정

-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(사용료 감경 건) : 2025. 7.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: 2025. 8. 5.
- 협약서 작성 및 신규시설 설치 : 2025. 10.

### 5. 법적근거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8조

## 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**영구시설물을 축조**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**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**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 □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

제8조(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)

-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**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**
-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**영구시설물을 축조**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**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